

# 2026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소재개발 실증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

경기도 바이오기업의 소재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적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**2026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소재개발 실증연구 지원사업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30일

경기도지사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사업목적

-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재 개발 및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

### 지원개요

| 지원내용   | 지원형태 | 지원 기업 수 |
|--|------|---------|
| 바이오 소재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적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수행 | 연구수행 | 2개사     |

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6년 12월

수행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이하 경과원)

## □ 추진절차

| 절 차          | 일 정              | 세 부 내 용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| 2026. 3월         | · 공고주체: 경기도<br>· 바이오 기업 R&DB 종합지원사업<br>- 소재개발 실증연구지원 |
| ↓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과제 신청서 제출·접수 | 2026. 4월         | · 신청기업 → 경과원<br>·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| 2026. 5월         | · 경과원 → 참여기업<br>· 선정 2주일 이내 사업협약 및 성과협약 체결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협약체결         | 2026. 5월         | · 경과원 ↔ 참여기업   |
| ↓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연구수행         | 2026. 5월~12월     | · 실증지원: 경과원 ↔ 참여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결과 보고회       | 2026. 12월        | · 참여기업 ↔ 경과원   |
| ↓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사후관리         | 과제 종료 후<br>3년 이내 | · 참여기업 → 경과원<br>· 성과관리 (종료 후 3년)                     |

※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## 2. 지원세부내용

- **지원내용** : 경과원 연구 인프라(연구장비, 시설, 시험·평가 지원, 전문인력 등)를 활용하여 소재 발굴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
- **지원분야** : 시험법 개발, 소재 분석, 기능 검증
  - (시험법 개발) 소재 분석·검증에 적용 가능한 신규 시험법 확립
  - (소재 분석) 기업이 보유한 소재의 성분 분석, 유효성분 추출, 구조 분석 등 지원
  - (기능 검증) 약효 검색, 독성·안정성 평가 등의 시험법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능성 특화 소재로의 발굴 지원
- 본 사업은 기업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과제를 경과원에서 직접 수행
  - 기업에게 과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, 기업부담금 없음

### 3. 신청안내

- 신청대상** :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
  - 본사,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
  -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한 R&D 수행중인 기업
- 신청기간** : 2026. 3. 30.(월) 09:00 ~ 4. 24.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**
  - 신청서 등 제출서류: 전자메일로 제출([eugene@gbsa.or.kr](mailto:eugene@gbsa.or.kr))
    - ※ 평일 기준(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) 2일 이내 접수안내 메일 발송
  - 우편 또는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
- 제출서류**

| 구분 | 제출서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서류명  | 제출서류(발급처)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| (첨부)서식 제1호               |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       |
|    | ② 참여의사확인서, 청렴계약이행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| (첨부)서식 제2호               |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③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첨부)서식 제2호               |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④ 기업 범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| (첨부)서식 제2호               |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⑤ 기업 범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협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첨부)서식 제2호               |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⑥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기업 입증가능서류(공장등록증/기업부설연구소/연구전담부서인증서 등)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      |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               |
|    | ⑦ 최근 2개년도(2024-25) 결산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               | 국세청 홈택스                  | 공고 마감일 이내 제출                  |
| 선택 | ① 기업의 범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첨부)서식 제2호               |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|
|    |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율서식                     | 증빙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③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)                   | 특허, 인허가증, 기타 가산점 인정 증명서류 | 접수일 기준, 인증 유효기간 지난 경우 제외      |

※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안내 예정

## 4. 지원제한

※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, 지원 취소(협약 해약)

- 공고일 [2026. 3. 30.(월)] 기준, 신청과제의 기업대표,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,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  -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  -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
    -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  -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
  - 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
    -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,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
    - 단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
   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함. (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)”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)
  - 이미 지원되었거나 “중단(불성실수행)” 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
  - 의무사항 불이행 시
    - 신청과제의 기업대표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  - 기업대표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기업대표,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검<br>토<br>기<br>준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<br/>(단, 2.항과 3.항의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 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<br/>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5.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을 (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)이 연속으로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한다)</li> <li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로 한다)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</li> </ol> |
| 조치               | 신청기업, 신청기업대표, 연구책임장의 경우 「사전지원제외 대상」으로 처리  |

## 5. 선정방법

### 사전적격심사

-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, 과제중복성, 제재사항 등
- 1차 서면심사 결과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합격 여부 함께 공지
- 사전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 결정

### 지원기업 선정 : 2026년 5월 1~3주차 예정

- 외부 산·학·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1차 서면 및 사전적격심사, 2차 발표\*(3배수)로 평가 진행  
\* 평가 방식 및 일정에 대하여 1차 결과와 함께 추후 공지
- 선정방법 :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
- 가산점 적용 :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, 최대 5점

- **범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** : 신청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대면심사 **평가점수의 20%를 감점** 하여 평가 총점으로 적용  
 ※ (참고) 범위반 적용법률 참고
- 미 선정 기업 중 60점 이상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,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
-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사업<br>계획   | 목표달성 가능성           |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           | 15         |
|            |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      |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   | 15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내용 및 추진전략, 일정의 타당성    | 15         |
|            | 기술의 사업성            |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        | 15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기술의 사업화(제품화) 및 마케팅 전략 | 10         |
| 기대<br>효과   |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|
|            |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 |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|
|            |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|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|
| 가산점        |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 |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5       |
| <b>합 계</b>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<b>105</b> |

※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**[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]**

- 적용기준
  -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
  -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
  -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
- 적용대상 :
  - 사회적 경제(여성, 장애인, 사회적)기업(1점)
  - 경기도가 선정한 ‘유망 중소기업’, ‘일자리 우수기업’, ‘일하기 좋은 기업’ (1점)
  -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‘가족친화 인증기업’ (1점)
  -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‘고용창출 우수기업’ (1점)
  -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(지식재산권 5건 이상,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)(1점)
  -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(1점)
  - 경기도내 소재 본사, 지사(캠퍼스) 위치한 공동연구기관(대학 또는 의료기관) 지정(1점)
  - 대미 관세 부과 수출 피해기업 (1점) \* 관세 피해 입증자료 제출 필수(수출신고필증, 수출실적 증명서 등)
  -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(1점) \* 소재지 증명 서류제출 필수

**선정안내** : 선정평가 이후 10일 이내

-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
-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## 6. 기타사항

### □ 성과귀속 및 관리

- 전문기관(경과원)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소재개발 실증연구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(일체의 지식재산권 포함)은 수행기관(경과원)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함
- 성과(결과)보고서, 물질·제품,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함
- **협약 체결 시 수행기관-참여기업 간 성과협약**(기술이전, 해외매출액 donation 등) **체결 필수**
-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하며,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사이의 성과협약에서 정하거나 합의로 인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또는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가 가능함.
-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,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
-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참여기업)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

### □ 다음 사유 발생 시 **지원대상 제외** 또는 **과제선정 취소** 가능

-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지원 자격(예: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
-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
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□ **R&D 졸업제 시행** :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

- 기준년도 : 2020년 과제부터 적용
-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 대상 제외

□ **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**
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(사용액의 5배 이내) 부과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
## 7. 문의처

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인프라지원팀

- 전자메일 : [eugene@gbsa.or.kr](mailto:eugene@gbsa.or.kr), ○ 전화번호 : 031-888-6890

별첨 (서식1) 2026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소재개발 실증연구 과제 신청서 1부.

(서식2) 기타 제출서류 각1부.

##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 에 따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

- (목적)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(조례 제1조)
- (법위반 적용 법률)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4개 분야 11개법\* (조례 제2조)
 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
 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, ❺ 산업안전보건법
 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, ❼ 대기환경보전법, ❽ 소음진동관리법, ❾ 물환경보전법
  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, ⓫ 지방세기본법
- (법위반 조회기간)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(조례 제6조)
  - 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 - 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- (적용대상)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  - (도내기업)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- (적용방법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 - 가.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 - 나.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- (법위반 사실 확인)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
  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
  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  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  - 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